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4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9. 6 고성군수
- 나. 회 부 일 자 : 1999. 9. 6
-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9. 9. 1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연발생유원지 허가제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6조제3항 및 제5항)
- 자연발생유원지 허가 취소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1990. 3. 19 조례 제1175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개정이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각 조항의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9. 9.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